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37

발의연월일: 2020. 11. 27.

발 의 자:김형동·김석기·송언석

안병길 • 윤창현 • 윤영석

金炳旭・박대수・지성호

김희국 · 임이자 · 김용판

권명호 · 김상훈 · 김 웅

최형두 · 이종성 의원

(17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016. 1. 1. 이전에는 직권 환급과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구분하지 않고, 지방세 납부일 다음 날이었음. 하지만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개정, 2016. 1. 1. 시행)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변경되어결국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함. 위 지방세기본법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개정)에 의해 종전에는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도 직권 환급과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구분하지 않다가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변경되었기때문임. 즉,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과 통일시켜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런데 2020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로 개정할 예정인 바,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역시 국세환급가산 금 기산일과 일치시켜 혼란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초과환급 받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에 의해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이 기산되는 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며, 직권 환급의 경우와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이에 경정청구로 인하여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부터 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형평성을 맞추어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을 "경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	
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	
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	
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	
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	
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	
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	1
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u>제6호</u>	<u>제7호</u>
<u>및 제7호</u>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	
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	
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	

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 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 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 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 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 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 2. ~ 4. (생 략)
- 5.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제6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지난날로한다.
-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

2. ~ 4. (현행과 같음)
5
<u>경정을</u>
-
<u><</u> 삭 제>

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 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 7. (생략)
- ②·③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